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326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4. 9. 2.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(단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서범준

별지